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60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안전 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14	윤재옥의원 등 10인	2025.11.12.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12.17.)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21.)
항공안전 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17	한준호의원 등 12인	2025.11.25.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6.2.10.)
				소위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6.4.21.)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3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124조”를 “제124조, 제129조제5항”으로, “인증”을 “인증,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금과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u>제124조</u>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u>인증</u>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2. ----- ----- ----- <u>제124조, 제129조</u> <u>제5항</u> ----- ----- <u>인증, 검사</u>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 <u>항공사업법</u> 」 제69조의2에 <u>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u>5. · 6.</u> (생 략)	<u>6. · 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u>출연금과 수입금</u> 으로 조달한다.	제12조(재원) ----- ----- ----- <u>재원</u>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제13조의2에 따른 차입금</u>
<u>3. (생 략)</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u><신 설></u>	<u>제13조의2(차입금) 기술원은 제6</u> <u>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u> <u>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u> <u>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u> <u>할 수 있다.</u>